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5

발의연월일: 2021. 3. 31.

발 의 자: 김수흥 · 김경만 · 김진표

김철민 · 김홍걸 · 문진석

설 훈·안호영·위성곤

유동수 · 한병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 있음.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 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u>2021</u>	세액공제) ① <u>2024</u>
<u>년 12월 31일</u> 이 속하는 과세연	<u>년 12월 31일</u>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